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28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권향엽 · 김현정 · 진성준
김용만 · 전진숙 · 박해철
임미애 · 최민희 · 박지원
박용갑 · 김 현 · 박선원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톱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톱킹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남양주시 스톱킹 살인사건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 치상 전력으로 이미 현행법에 따른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던 스톱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그 결과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한 전자장치가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등의 피해자보호 수단과 연동되지 않아 결국 스토킹 살인을 초래하였으므로,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확대·연장하고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나.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최초 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확대하고, 총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 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3개월”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을 “각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되,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해당 잠정조치와는 별개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범죄를 범한 자로서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스톱킹행위자에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항 제3호의2의 잠정조치를 병과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제7항 본문 중 “3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을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를 저

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생략)</p> <p>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③ ~ ⑥ (생략)</p> <p>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p>	<p>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다만,</u> <u>해당 잠정조치와는 별개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범죄를 범한 자로서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스톱킹행위자에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항 제3호의2의 잠정조치를 병과하여야 한다.</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u>1</u> <u>년</u>----- ----- . ----- ----- ----- -----</p>

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
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③ (생략)

-----각 1년-----
-----연장할 수 있되,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
과할 수 없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기간 연
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
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
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
려야 한다.

-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 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① ~

⑥ (생략)

⑦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⑦ -----제6항-----

-----.

1. ~ 3. (현행과 같음)

⑧ -----제6항-----

-----.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1
년-----.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⑧ · ⑨ (생략)

-----직권이
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년-
-----.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피
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
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종
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을 초과할 수 없다.

⑨ · ⑩ (현행 제8항 및 제9
항과 같음)